2021년 2월 상암동
주민자치위원회 회의록
(정기회, 임시회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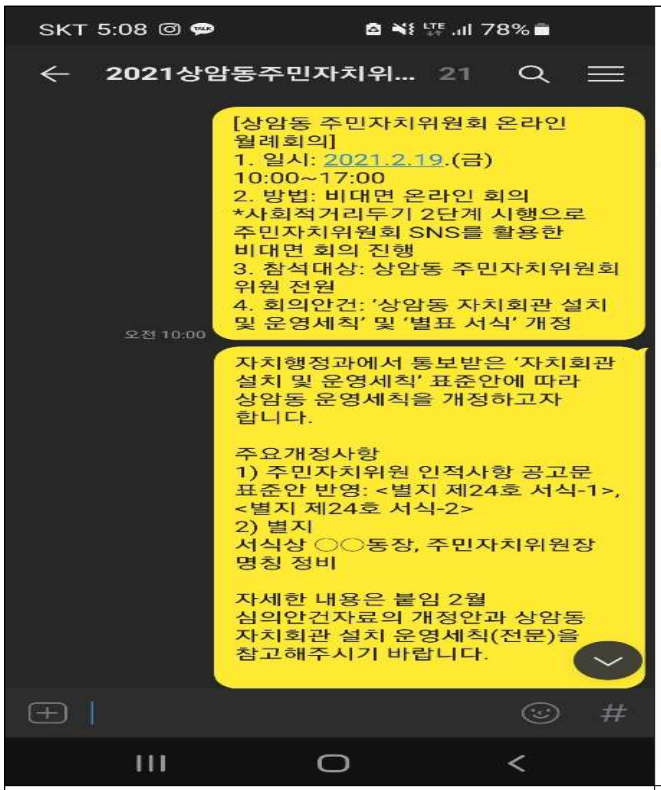
일 시	2021년 2월 19일	장 소	주민자치위원회 SNS (온라인 비대면 회의)
안 건	○ 상암동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세칙 및 별표 서식 개정		

회 의 내 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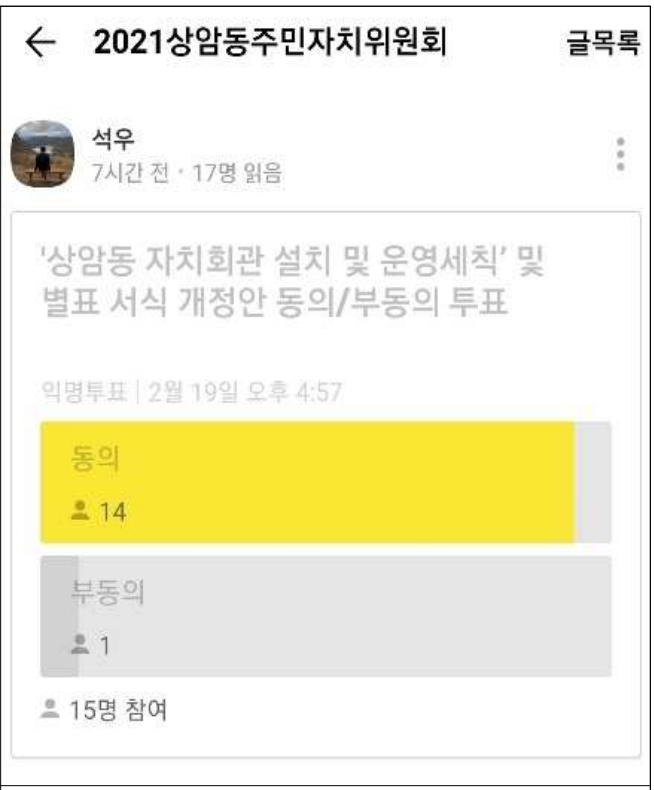
▣ 주민자치위원회 안건 논의 내용

- 상암동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세칙 및 별표 서식 개정

온라인투표 참석인원	'상암동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세칙 및 별표 서식 개정'에 관한 건			비고
	동의	부동의	기권	
15명(고문 3명 제외)	14명	1명	0명	가결



온라인 회의 안건 공지



회의결과 가결

참석위원	15명(고문 3명 제외)	불참위원	0명

위 원 장: 김 종 학 (인)

간 사: 이여의주 (인)

심 의 안 건

❑ 상암동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세칙 개정

가. 개정이유

『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』 제17조(구성 등)에 따라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인적사항 공고 시 외부로 공개되는 위원들의 정보범위를 최소화하여 개인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, 법령에 정한 중요내용을 명확히 표시하고자 상암동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세칙 일부와 별표의 양식을 정비하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○ 〈별지 제24호 서식〉 변경

- 〈별지 제24호 서식〉 삭제 및 〈별지 제24호 서식-1〉, 〈별지 제24호 서식-2〉 추가
- 공개 인적사항: 직위, 성명, 성별, 위촉일, 만료일 공개사항 한정
- 공개 기간: 위촉 공고 시 30일 공개기간 한정

○ 「상암동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세칙」 제10조(강사) 제4항 개정

- 운영세칙에 인용된 별지 호수 변경, 별지 서식에 인용된 명칭 정비

○ 「상암동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세칙」 제22조(자원봉사 참가신청) 개정

- 『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』 제8조에 근거, 구청장과 동장이 자치회관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도록 되어있음에 따라 “위원회에”를 “동장에게”로 변경

《신・구조문대비표》

현 행	개 정(안)
제10조(강사) ① (생략) ② (생략) ③ (생략) ④ 자치회관의 모든 강사는 마포구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강사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며, 강의 내용과 운영상의 문제점 등을 명시한 별지 제30호 강의계획서를 작성하여 자치회관에 제출하여야 한다. ⑤ (생략)	**제10조(강사)** ①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 ③ (현행과 같음) ④ 자치회관의 모든 강사는 마포구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강사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며, 강의 내용과 운영상의 문제점 등을 명시한 별지 제30호 서식-2호 강의운영일지를 작성하여 자치회관에 제출하여야 한다. ⑤ (현행과 같음)
제22조(자원봉사 참가신청) 자원봉사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자원봉사자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	**제22조(자원봉사 참가신청)** 자원봉사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자원봉사자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○ 상암동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세칙 〈별지 제1호, 제4호, 제6호, 제7호, 제9호, 제11호, 제14호, 제15호, 제16호, 제18호, 제19호, 제20호, 제21호, 제22호, 제24호, 제25호, 제26호, 제27호, 제28호, 제29호, 제32호〉 서식 및 〈별지 제16호 서식-첨부〉 정비

- “○○동”을 “상암동”으로 변경
- “주민자치위원장(회장)”을 “주민자치위원장”으로 변경
- “위원장(회장)”을 “위원장”으로 변경
- “부위원장(부회장)”을 “부위원장”으로 변경

다. 개정 운영세칙 및 별표 서식 1부.